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1093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1. A

2. B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교륜

피고 2.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도희

변론 종결2023. 4. 13.

판결 선고2023. 5. 11.

주 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2020. 11. 6.자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와 C 사이에 2020. 11. 10.자 50,000,000원, 2020. 11. 30.자 50,000,000원, 2020. 12. 1.자 5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C은 2011. 4.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세무조사청이 2020. 5.경 주식회사 E의 주류유통과정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이 위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밝혀져 2020. 9. 16.경 세무조치가 이루어졌고, C은 그에 따라 2021. 4. 8.경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534,476,74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그 후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1	부가가치세	2019. 1기	2019.06.30.	13,541,410
2	부가가치세	2018. 1기	2018.06.30.	19,924,110
3	부가가치세	2017. 1기	2017.06.30.	21,676,120
4	부가가치세	2017. 2기	2017.12.31.	22,103,750
5	부가가치세	2018. 2기	2018.12.31.	23,074,270
6	부가가치세	2019. 2기	2019.12.31.	32,835,060
7	종합소득세	2019	2019.12.31.	140,775,000
8	종합소득세	2017	2017.12.31.	128,504,510
9	종합소득세	2018	2018.12.31.	132,042,510

나. 증여계약

C은 2020. 11. 27.경 D을 폐업하면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던 은행예금계좌에서 C의 아들 피고 A에게 2020. 11. 6.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증여하고, C의 배우자 피고 B에게 2020. 11. 10.

금 5,000만원, 2020. 11. 30. 금 5,000만 원, 2020. 12. 1. 금 5,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무렵 C의 재산상태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사이 :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는 C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로서 최종일인 2019. 12. 3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였고, 자금 추적 및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매입내역에 따라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C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증여행위 당시 이와 같은 사해행위 사실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C의 채무초과상태라는 사실 및 조세채권 발생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가. 피보전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후 피고들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채무변제, 물건 구입 등으로
소비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피고 A은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박근정